

고성-통영-거제 3개 시·군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

제 출 자	고 성 군 수
제출연월일	2023. 5. 12.

고성-통영-거제 3개 시·군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

제출연월일: 2023. 5. 12.

제 출 자: 고성군수

1. 제안이유

- 가. 고성-통영-거제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역량 결집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동반자적 공동발전 방안 모색과 우호 협력 증진
- 나. 공동 현안사항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및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 정책개발 도모
- 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할 시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한 후 고시하도록 규정

2. 관련근거

- 가.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제2항
 -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3. 주요내용

- 가. 협의회 규약(안)
 - 1) 목적 및 명칭(안 제1조 ~ 안 제2조)
 - 2) 협의회 구성 및 조직(안 제3조)

- 3) 회장 선임 및 직무(안 제4조 ~ 안 제5조)
- 4) 협의회 처리사무(안 제6조)
- 5) 협의회 사무국 등(안 제7조)
- 6) 협의회 의안 상정, 정족수와 회의(안 제8조 ~ 안 제9조)
- 7) 협의회 경비부담 및 규약개정(안 제10조 ~ 안 제11조)
- 8) 운영 세칙(안 제12조)

나. 협의회 구성

- 1) (구 성) 회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구성
 - 통영시·거제시·고성군 각 6명의 위원으로 구성
- 2) (회 장) 자치단체별 사전 협의하여 순번제로 역임
- 3) (위원임기)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
- 4) (회 의) 정기회 2회(상·하반기), 임시회(필요시)
- 5) (경비부담) 회의를 주최하는 시·군에서 부담하되, 공동사업 추진 부담액 등은 협의 결정
- 6) (실무협의회) 각 시·군 협의회·의안 담당 국·과장으로 구성

다. 협의회 기능·역할

- 1) 산업, 경제, 문화, 관광 등 포괄적 협력체계 마련
- 2) 고용 및 산업위기 대응 공동 발전계획 수립
- 3) KTX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을 위한 제반사항 공동 검토
- 4) 시군별 축제(한산대첩축제, 바다로 세계로 축제, 공룡엑스포) 상생 발전 방안 마련
- 5) 그 밖에 지역별 특성 및 균형발전을 위한 제반 사항

라. 추진일정

- 1) 2023. 5 ~ 6.: 3개 시·군 행정협의회 규약 의회 보고 및 고시
- 2) 2023. 8.: 시·군 공동 정책안건 건의
- 3) 2023. 10.: 3개 시·군 행정협의회 정기회 개최

마. 회장 순번제 선임

- 1) 순번: 고성군수 → 거제시장 → 통영시장
- 2) 임기: 1년(2023. 7. 1.부터 임기 시작 예정)

4. 추진경과

가. 3개 시·군 행정협의회 구성 제안(고성→거제, 통영): 2018. 8.

나. 3개 시·군 행정협의회 실무 간담회 개최: 2018. 11. 15.

다. 3개 시·군 업무협약 체결: 2018. 12. 17.

라. 2019년 1차, 2차 정기회 개최: 고성군 - 7건 안건 채택

마. 2020년 3차, 4차 정기회 개최: 거제시 - 4건 안건 채택

바. 2021년 5차, 6차 정기회 개최: 통영시(서면회의) - 3건 안건 채택

사. 2022년 코로나 및 지자체장 선거 등으로 미개최

아. 3개 시·군 행정협의회 실무자 회의 개최: 2023. 3. 28.

- 행정협의회 구성 운영 계속 추진
- 행정절차 이행: 의회 보고 후 고시

붙임 1. 고성-통영-거제 3개 시·군 행정협의회 규약 1부.

2. 관련법령 1부.

고성-통영-거제 3개 시·군 행정협의회 규약

제1조(목적) 시·군간 역량 결집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동반자적 공동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3개 시·군 행정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협의회의 명칭은 고성-통영-거제 3개 시·군 행정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구성 및 조직) ① 협의회 지방자치단체는 고성군·통영시·거제시로 한다.

② 협의회 회원은 시장·군수와 관련 부서장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회장은 1명으로 한다.

제4조(선임) ① 회장은 지방자치단체별 사전 협의하여 순번제로 선임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위원은 각 지방자치단체별 시장·군수가 선임하며,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 제1항에 의거 순번제로 역임한다.

제6조(처리사무) 협의회는 다음 사무를 협의한다.

1. 산업, 경제, 문화, 관광 등 포괄적 협력체계 마련

2. 고용 및 산업위기 대응 공동 발전계획 수립
3. KTX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을 위한 제반사항 공동 검토
4. 시군별 축제(한산대첩축제, 바다로 세계로 축제, 공룡엑스포) 상생 발전 방안 마련
5. 그 밖에 지역별 특성 및 균형발전을 위한 제반 사항

제7조(사무국 등) ①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1. 사무국은 회장 시·군에 둔다.
2. 사무지원은 시·군 해당 업무의 주무담당으로 한다.
3. 협의회에 제반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4. 협의회 회의에 부의되는 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개최 전·후에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별 소속 국·과장과 의안 관련 국·과장으로 구성한다.
2.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부의안건을 사전 협의하며 협의회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제8조(의안 및 정족수) ① 위원은 의안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실무협의회의 사전 검토를 거쳐 협의회의 회의에 상정한다.

②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불참사유로 제출된 위임장은 출석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

제9조(회의) ① 협의회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는 연 2회로 하며, 상·하반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에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⑤ 회장은 협의회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 중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경비부담) 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협의회에서 결정한 공동사무의 처리 또는 공동사업의 추진에 따른 부담액은 필요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결산보고는 다음해 상반기 정기회 시 하며, 경비 또는 부담액의 수입·지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규약개정) 협의회 규약의 개정은 제8조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약은 고성군·통영시·거제시 3개 시·군이 의회에 보고 후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70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

제171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

1. 협의회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
5. 협의회
6. 그 밖에 협의회